

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21
----------	-------

발의연월일 : 2014. 4. 28.

발 의 자 : 심재권 · 김경협 · 윤후덕
인재근 · 유대운 · 배기운
이찬열 · 김광진 · 정호준
백재현 · 전순옥 · 우상호
이미경 · 조정식 · 부좌현
김동철 · 유성엽 · 전정희
정성호 · 김성곤 · 박기춘
김영록 · 추미애 · 김춘진
주승용 · 민홍철 의원
(26인)

제안이유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일명 A규약, 1966)”을 의미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함.

통일 전 서독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만 3천여 명과 그 가족 25만 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킴.

유럽연합의 경우도 2000년 이탈리아가 북한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대화를 개최, 2009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함.

생존권 증진에는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우리 정부가 남북인권대화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를 북한인권증진 업무 주무부서로 하는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남북인권대화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의 개념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여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은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② 북한인권증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권”이란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유엔이 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말한다.

2. “생존권”이란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유엔이 정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말한다.

3. “남북인권대화”란 남북 당국이 북한주민의 자유권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회담을 말한다.

4.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의약품·의료장비·건설장비·농업기술 등의 지원 사업
- 나.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 다.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 사업
- 라. 그 밖에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북한 임산부”란 북한에 거주하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 6. “북한 영유아”란 북한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 7.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8.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인권대화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권대화자문위원회) ① 남북인권대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대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를 추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지원협의회) ① 인도적지원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도적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의 협의·조정

2.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등의 지원 사업

3. 인도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4. 인도적지원에 관한 외국정부·국제기구·국제단체·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관련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사항
6. 집행계획의 중단과 재개에 관한 사항
7.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10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도적지원사무소의 설치) ①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도적지원협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2.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과 상봉 및 송환에 관한 업무
3.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4. 국내의 각종 기관·단체들이 행하는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5. 그 밖에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무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정보센터의 설치) ① 북한주민 인권의 인권개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통일부 내에 인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항

2. 북한주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된 사항
 3.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과 관련된 사항
 4.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 ③ 제2항제1호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센터는 발간한 자료에 대하여 국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정보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국회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남북인권대화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의료·의약품·의료 기자재 등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5.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계 등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7.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인권증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7조 인권대화자문위원회, 제8조 인도적지원협의회, 제9조 인도적지원사무소, 제10조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인권대화자문위원회, 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지원사무소, 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은 기존의 통일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심재권의원실 강창희 비서(02-788-2485)